외화표시자동차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LIG손해보험은(이하 '회사'라 합니다.) 보험료를 영수하고 고지서에 기재한 사항과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 보험을 위하여 작성한 청약서와 본 보험증권에 기재한 책임한도금액, 면책조항, 조건, 기타 조항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기명피보험자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손해보상조항

Ⅰ. 담보사항 A1 - 신체상해책임 :

자동차의 소유, 유지 또는 사용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해진 신체의 상해와 이에 기인하는 질병과 사망 등에 소요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전액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Ⅱ. 담보사항 A2 - 재물손해책임 :

자동차 소유, 유지 또는 사용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가해진 파손과 이로 인하여 사용불능으로 상실한 이익을 포함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전액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Ⅲ. 담보사항 B - 차량포괄담보 :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동차가 직접 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자동차손해'라 한다)를 보상한다. 그러나 자동차가 타물과의 충돌 또는 자동차 자체의 전복으로, 이에 연결한 차량상호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유리의 파손, 비래물, 낙하물, 화재, 폭풍우, 지진, 폭발, 우박, 홍수, 수손, 파괴행위 또는 만행에 기인하는 손해는 충돌, 접촉 또는 전복에 의한 손해로 하지 아니한다.

Ⅳ. 담보사항 C - 화재, 낙뢰, 수송 :

다음사유로 인한 자동차 손해를 보상한다.

(a) 화재 또는 낙뢰

(b) 자동차가 소재하는 장소에 설비된 고정난방시설의 돌연, 이상 또는 과실조

작에 기인하는 매연 또는 훈화

(c) 육상 또는 국내수로에서 자동차를 수송하는 차량 또는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충돌, 또는 탈선

Ⅴ. 담보사항 D - 도난 :

(a) 자가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무면책담보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한 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한다.

(b) 기타 자동차에 적용되는 면책조항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한 자동차손해로서 자동차전체를 도난당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1사고당 $25.00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Ⅵ. 담보사항 E - 폭풍우, 지진 , 폭발, 우박, 홍수, 수손 :

폭풍우, 지진, 폭발, 우박, 홍수 또는 누설로 인한 자동차손해를 보상한다.

Ⅶ. 담보사항 F - 충돌 :

자동차가 타물과 충돌, 전복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고지서에 면책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면책금액의 초과액을 보상한다.

Ⅷ. 담보사항 G - 의료비 :

하기의 자동차에 승차 또는 승강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 또는 타당한 의료, 외과치료, 병원차, 입원, 직업간호부의 비용과 이러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타당한 장의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상기비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긴 것에 한한다.

(1) 본 보험증권에 의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담보되어 있고 기명피보험자 자신이 사용중인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의 허가를 얻어 사용중인 자동차

(2)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 본 보험증권의 담보사항 XI이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그러나 (a)부상이 그 자동차의 사용 중에 생긴 것으로서 기명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또는 이들의 자가용운전사, 가사사용인의 운전 중 혹은 (b)부상이 기명피보험자나 그 배우자가 그 자동차를 점유함으로써 생긴 경우에 한한다.

Ⅸ. 담보사항 H - 도난시의 차량임차비 보상 :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도난이 본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을 경우 피보험자가 임차대용한 택시를 포함한 차량의 비용으로서 1일당 $ 15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상을 할 것임을 동의한다.

이 보상은 도난 보고가 회사 또는 경찰에 통고된 시간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된 후에 시작하여 본 증권의 만료일자에 관계없이 그 자동차의 소재가 피보험자나 회사에 알려진 일자 또는 회사가 이러한 도난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해결한 일자까지의 기간중에 일어나는 비용에 의한다. 이러한 보상은 공용 또는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소유, 관리되지 아니한 자가용 자동차에 한한다.

Ⅹ. 추가비용(응소에 관한) :

고지서에 기재한 책임한도금액이 이외에 회사 또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 사용된 비용을 보상한다.

XI. 다른 자동차운전의 권리 :

기명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자가용 운전사와 가사 고용인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이에 승차하였을 경우 본 보험증권이 정한 사용목적(오락과 업무)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담보사항 A1과 A2의 담보를 하기 자에게 적용한다.

(1) 기명피보험자. 그러나 개인으로서 본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에 한한다. 기명피보험자가 부부일 때 그들 중 1인이나 또는 양인이 상기 자동차의 소유자일 경우에는 부부 쌍방에 적용한다.

(2) 동일 세대내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고용주.

본 조항은 하기 각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전기 운전사 또는 고용인을 제외한다)이 소유, 공유 또는 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와 임차자동차를 이용할 때의 그 임차자동차 또는 상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여된 자동차

(b) 상기 고용주에 대하여 그 소유와 공유의 자동차 또는 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또는 빈번히 이용하는 임차자동차

(c) 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피보험자
(d) 기명피보험자 자신의 부상 또는 사망
(e) 자동차 수리공장, 일반 자동차 차고, 자동차 판매대리점, 자동차 서비스 스테이션 또는 공중 자동차 주차장의 운영에 기인하는 사고

XII. 피보험자의 정의 :

담보사항 A1과 A2 그리고 본 증권의 다른 부분에서 단지 "피보험자"라 함은 상기 보험사항이 적용되는 때에 한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하에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포괄 지칭한다.

본 보험은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하기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기명피보험자의 부상 또는 사망
(b) 회사가 담보하지 아니한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수반차)와 연결 사용하였을 때 또는 담보된 피견인자동차를 당 회사가 동종 보험의 계약이 없는 타 자동차와 연결 사용하였을 때
(c) 서비스공장, 일반자동차 차고, 자동차 판매대리점, 자동차 서비스 스테이션, 자동차 주유소 또는 공중자동차 주차장의 운영에 기인한 사고에 있어서는 그 경영주, 단체 또는 그 대리인이나 고용인
(d) 고용인으로서 고용주의 업무에 종사중 고용주의 영업상 자동차의 유지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동일고용주에 고용된 다른 고용인에게 입힌 부상 또는 사망

XIII. 자동차의 정의 :

본 보험증권에서 '자동차'라 함은 별단의 기재가 없는 한 본 증권에 기재된 차량과 그 통상의 장비를 말한다. 본 증권의 담보사항 A1과 A2에 있어서는 증권에서 사용목적(오락 및 업무)의 자동차를 수반차(거주용 수반자동차는 제외)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오락 또는 가정의 목적에만 사용할 때에는 이들 수반차를 포함한다. 2대 이상을 담보한 때에는 본 증권의 조건은 개별적으로 각 자동차에 적용된다. 그러나 자동차에 수반차를 연결한 때에는 담보사항 A1과 A2의 책임한도금액은 그 전체를 1대의 자동차로 한다. 본 증권에서 "수반차"라 함은 소형 수반차를 포함한 것이다.

XIV. 공동해손과 구조료 :

회사는 보험증권의 수송보험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해손분담금과 구조료를 보상한다.

XV. 자동적 담보 :

본 보험증권의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본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한 보험을 그 인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a) 그 다른 자동차가 본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와 대체하였을 경우에 대체된 자동차에 적용되었던 범위의 보험을 적용하고

(b) 당해 다른 자동차가 추가된 자동차인 경우에 그 자동차를 인수하였을 때에 본 증권이 적용하는 지역내에 있는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전부를 당사가 보험계약 하였을 때에 한하여 또한 자동차 전부에 관하여 적용하는 보험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담보사항 B, C, D, E, F에 있어서 고지서에 기재하는 책임한도금액은 대체된 자동차의 현시가로 하며 면책금액이 기재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본항의 (a), (b) 어느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 조항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명피보험자가 본 보험이외에 다른 유효하고 청구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고 그 보험계약으로 보상하는 손해

ⓑ 본 보험증권의 유효기간 외의 일시적인 때. 그러나 이와 같은 인수일시가 본 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이 발효기간 전의 일시일 때에는 보험은 그 시기부터 적용한다. 기명피보험자는 본 보험을 이러한 다른 자동차에 적용함으로써 요구되는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 보험은 대체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인도한 때에 종결한다.

XVI. 대용자동차의 임시사용 :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자동차가 고장, 수리,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하여 통상사용이 불가능한 때 담보사항 A1과 A2에 있어서 그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보험을 기명피보험자가 대용으로서 임시로 사용하는 다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그러나 본 조항은 이러한 대용자동차의 소유자나 그의 고용인

을 피보험자로서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VII. 보험의 기간, 지역, 사용의 목적 :

본 보험증권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가 고지서 제10항에 기재된 지역내에 있고 고지서 제8항에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유지되었을 때의 우발사고와 직접 또는 우연히 받은 손해에만 적용된다.

면 책 조 항

본 증권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a) 전쟁, 외습, 외적의 행위, 전투행위(선전포고 유무에 불구), 내란, 반란, 혁명, 폭동, 군사상의 권력 또는 강탈자의 권력, 압수, 징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인하는 사고와 손해 또는 합법적인 정부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의 포기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어나는 사고와 손해

(b) 본 증권에 특히 기재 또는 고지되고 이에 대한 보험료가 징수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때

(c) 본 증권의 조항에 명백히 반대된다고 할지라도 통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방사능, 원자핵분열, 또는 융합과 핵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청구에 대하여도 보상 또는 응소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Ⅱ. 담보사항 A1과 A2에서

(a) 피보험자가 계약 또는 합의로서 부하한 채무

(b) 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도는 임차하여 당사와 동종보험계약이 없는 수반차의 견인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또는 본 보험증권의 보험목적이 견인자동차를 당사에 동종보험의 계약이 없는 기명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임차한 자동차와 연결사용 하였을 때

(c)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가정의 업무는 제외)에 종사중 또는 자동차의 운전, 유지 또는 수리중에 받은 부상 또는 사망

(d)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노동자의 재해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e)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관리 또는 수송하는 물건의 파손

(f) 피보험자의 가족의 부상 또는 사망
(g)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자

Ⅲ. 담보사항 B, C, D, E 와 F에서는
(a) 폭풍,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에 수반하는 폭동 또는 내란에 기인하는 손해
(b)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손, 소모, 빙결, 기계나 전기의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본 증권이 담보하는 다른 손해의 결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c) 의류와 소지품
(d) 타이어. 그러나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것과 본 증권이 담보하는 다른 손해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e) 자동차를 국내수로 이외의 해상수송을 위하여 수송중 또는 수송업자나 그 대리인의 보관, 관리하에 있을 때에 생긴 손해
(f) 자동차가 물상담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본 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

Ⅳ. 담보사항 B 와 D에서는
(a) 물상담보권에 의하여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점유한 자의 횡령, 착복 또는 은닉으로 인한 손해
(b) 절도나 강도에 의한 공구나 수리비품의 손해, 그런 자동차 전체의 도난은 제외한다.

Ⅴ. 담보사항 G 에서는
(a) 피보험자가 어떤 계약 또는 합의로서 부하한 채무
(b) ① 그 부상이나 사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지급되는자와 ②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가정업무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의 부상 또는 사망

조 건

조항 1에서 6까지는 전 담보사항에 적용되고 7에서 18까지는 그 조항에 기재된 담보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피보험자의 협력 :

피보험자는 회사에 협력하여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에서의 심문과 질문에 응하여야 하며 화해의 성립·증거물의 획득과 제공 또는 증인의 출석을 얻는 일, 소송진행에 조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지급한 경비(이익의 상실은 제외)를 보상한다.

피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단으로 지급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든지 혹은 사고시 긴급진료비와 긴급조치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것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대위 :

회사는 본 증권에 의하여 손해를 지급하였을 때는 그 보상한 금액 범위내에서 피보험자의 모든 청구권을 대위하며 피보험자는 회사가 이와 같은 획득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

3. 변경 :

회사의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본 증권의 일부에 발행한 배서에 의하여 본 증권에 기재된 사항이 포기나 변경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점이나 기타의 자가 이러한 내용의 통지를 받거나 그 통지에 대한 승인이나 동의를 하더라도 본 증권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포기 또는 변경케 하지 못하며 본 증권의 조항에 인유한 여하한 권리의 주장도 금하지 못한다.

4. 양도 :

본 보험증권에 의한 권리 이익의 양도는 이에 대한 동의를 본 증권에 배서하기까지는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지우지 못한다. 그러나 보험기간내에 기명피보험자가 사망, 파산, 또는 지급불능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망 또는 파산선고일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1)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상속인 또는 법률상 대표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2) 전기 법정 상속인 또는 법률상 대표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합법적인 이유로 자동차를 임시 보관하는 자를 담보 A1, A2의 적용 또는 본 약관 ⅩⅡ항의 규정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한다.

5. 해지 :

본 보험증권은 기명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하거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시를 기재한 통지서를 회사에 우송함으로써 해지될 수 있다.

본 보험증권은 회사에서 본 증권에 기재된 주소의 기명피보험자에게 해지통지서를 우송한 일자로부터 최소한 10일 이후인 해지기일을 기재한 해지통고서를 우송함으로써 해지된다. 상기통고서의 우송은 완전한 해지통고의 증거가 되며 통고서에 기재된 해지의 효력발생일시로부터 보험기간의 중단이 될 것이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회사가 이러한 통고서를 수교전달하는 것은 우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명피보험자가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판례상의 단기요율에 의하여 기경과보험료를 산출한다. 회사가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기경과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료의 청산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되 그 당시에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지체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회사의 수표 또는 회사의 대표자의 수료를 전술한 방법으로 우송 또는 수교전달하였을 때에는 이것으로 기명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한다.

6. 다른 보험 :

본 증권에 의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고 유효한 다른 보험의 초과분으로 한다.

7. 사고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통고 - 담보사항 A1, A2, G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서면통지는 피보험자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회사에 전달되여야 한다. 상기 통고서는 동일피보험자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항, 사고발생의 상황과 일시 및 장소, 부상자와 적절한 증인의 성명과 주소, 이들 사항에 관하여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기되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의 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수취한 요구서, 통고서, 소환장 또는 소송절차에 관한 것을 신속히 회사나 전기 회사의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 폭행과 구타 - 담보사항 A1, A2, G :

폭행과 구타는 피보험자가 직접 범하였거나 또는 그의 지시에 의하여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고로 간주한다.

9. 책임한도금액 - 담보사항 A1 :

매1인에게 적용되는 본 고지서 기재의 신체상해책임한도금액은 1사고에서 1인에게 가하여진 신체상해, 질병 또는 그 사고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손실과 보험관리의 손실을 포함하는 모든 손실에 대한 회사 책임의 한도금액이다.

1사고에 적용되는 본 고지서 기재의 이러한 책임한도금액은 상기 1인당에 관한 약정을 조건으로 1사고에서 2인 이상에게 입혀진 상기 모든 손실에 대한 회사책임의 총 한도금액이다.

10. 책임한도금액 - 담보사항 A1, A2, G :

본 고지서에 표시한 책임한도금액은 한 사고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한 회사 책임의 총 한도금액이다. 1명의 피보험자 외에 다른 사람을 포함시켜도 회사의 책임한도금액을 증가하게 하지 못한다.

11. 책임한도금액 - 담보사항 B, C, D, E, F :

자동차와 그 장비에 관한 회사의 책임한도금액은 손해발생 당시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된 물건의 현실가격으로 하며 또 이 현실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타당한 수리나 대체의 비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 손해는 위에 따라서 견적 또는 확정되며,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고지서에 기재한 책임한도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2. 책임한도금액 - 담보사항 G :

1인에게 적용하기로 고지서에 기재한 의료비의 책임한도금액은 한 사고에 의하여 부상을 입거나 또는 그 부상에 기인하여 사망한 자의 각인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회사 책임한도금액이다.

13. 평가, 수리, 대체, 위탁 - 담보사항 B, C, D, E, F :

손해액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각 일방의 서면요구로 쌍방은 각각 적임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감정인 1인씩을 선정하고 이 2인의 감정인은 먼저 적임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재정인 1인을 선정한다.

다음에 감정인들은 손해를 감정하고 쌍방의 합의에 실패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위된 금액만을 재정인에게 제출한다. 이들중 2인의 서면에 의한 재정이 손해금액을 결정한다.
피보험자와 회사는 각기 그들이 선정한 감정인의 보수를 지급하고 감정과 재정에 관한 다른 비용은 양분하여 부담한다.
회사는 평가나 본 보험증권에 의하여 규정한 어떠한 검사에 관한 회사의 요구행위 또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본 증권의 여하한 조항의 권리나 이익을 포기 상실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회사의 수의로 손해보상의 요구를 받은 보험의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종 또는 동 품질의 다른 물건으로서 수리나 대체 또는 본 보험증권의 조항에 의하여 결정하는 손해금액을 통화로서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금액이 정하여 있을 때에는 그 면책금액을 공제한다. 본 보험증권에 의한 보험의 목적물은 회사에 위탁할 수 없는 것이다.

14. 회사에 대한 소송 - 담보사항 A1, A2 :
피보험자가 배상의무가 있는 금액에 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공판후의 판결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자와 회사간에 서면상의 합의에 의한 최종적인 확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보험자는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청구권이 없는 것이다.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그러한 판결이나 합의된 날부터 12개월이내에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상의 청구권은 무효로 되는 것이다. 여하한 사람이나 단체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여하한 소송에 당 회사측과 공동 피고로서 참가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피보험자 또는 그의 유산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지급 불능이 된 이유로 회사는 본 보험증권에 의한 회사의 보상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5. 회사에 대한 소송 - 담보사항 B, C, D, E, F :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본 보험증권의 전조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손해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후이며 또한 손해의 전액이 본 보험증권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작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16. 손해발생시의 기명피보험자의 의무 - 담보사항 B, C, D, E, F :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명피보험자는,

(a) 그 손해가 본 보험증권에 의하여 보상될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자동차를 보호하여야 한다.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보호를 태만히 한 데 기인한 손해의 증가는 본 보험증권에 의하여 보상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동차를 위하여 사용된 타당한 비용은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b) 그 뜻을 지체없이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절도나 강도 등의 경우에는 경찰 또는 기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자기 부담인 비용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복구를 위하여 어떤 보수나 사례를 제공 또는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c) 회사가 서면으로 연기되지 아니하는 한 손해발생 후 60일 이내에 피해물건에 관하여 선서문서 형식으로 손해의 증거를 회사에 체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거제출 서면에는 피해물건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와 모든 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물상담보 또는 손해발생 당시의 현시가, 손해의 금액, 손해발생 장소, 일시와 원인을 기재하고 또는 그러한 물건을 담보한 모든 타보험의 명세와 담보금액을 기입하고 피해물건에 관한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7. 의료와 기티 보고 신체검사 - 담보사항 G :

부상자나 그 대리인은 회사가 요구가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사고와 부상에 관한 취득할 수 있는 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가 진단서와 기록서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위임권한을 수행한다. 부상자는 회사의 의당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회사가 선택한 의사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손해청구의 증거와 지급 - 담보사항 G :

치료완료 후 또는 의료비가 회사의 책임한도금액과 동액이거나 이를 초과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을 때 이들중 어느 것이든지 먼저 도래할 경우에는 부상자나 그 대리인은 지체없이 치료한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명과 주소, 치료의 내용 정도 및 일시, 진료비의 명세 또는 지급금액을 기재한 손해청구의 증거서류를 그것이 진정함을 선서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상자나 그 대리인은 이러한 의사와 병원으로 하여금 치료의 내용 정도 및 일시 또한 이에 대한 의료비의 명세와 지급을 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선서한 손해청구증거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부상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병원에 언제든지 의료로 인한 지급을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당금액을 당해부상으로 인유한 부상자에의 지급금액 또는 부상자의 위하여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본 조항에 의한 지급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승인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조항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보상책임의 승인이 되지 아니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LIG손해보험은 사장이 본 증권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본 증권의 고지서에 당사의 정당한 수임자의 부서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외화표시자동차보험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본 증권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분할납입할 수 있다.

연2회 분할납입시 (매 6개월마다 납입)	연3회 분할납입시 (매4개월마다 납입)
1회 . . . $	1회 . . . $
2회 . . . $	2회 . . . $
	3회 . . . $

2) 폭발위험 부담보특약

본증권은 폭발로 인한 위험은 담보하지 아니하며 주유소에서 주유를 위하여 사용한 기기나 기름자체로 인한 손해도 담보하지 아니한다.

3) 기계장치위험 부담보특약

본증권은 원동력으로 가동되는 기기가 자동차에 견인되거나 적재되었거나 또는 자동차로부터 분리할 수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이 기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4) 승객배상책임 부담보특약

본증권은 담보사항 A1, A2에서 자동차의 승객이 입은 신체상해(사망을 포함) 또는 승객의 재산손해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오락용, 업무용, 자가용 승용차와 화물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책임보험 초과손해 담보특약(Ⅰ)

본증권은 보험조항 A1(신체상해책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액을 담보하여 본 증권에 표시된 보상한도는 상기 법령에 규정한 금액을 포함한다.

6) 책임보험 초과손해 담보특약(Ⅱ)

본증권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동법시행령(1980.8.1 개정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을 이행할 것을 이서로서 합의한다. 상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

(a)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금한도는 사망의 경우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 부상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8,000만원, 치료중 사망의 경우 9,500만원, 부상치료후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9,500만원으로 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1사고당 사망자 수나 부상자수에 제한없이 보상하고, 만일 상기의 보험금액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본 증권상에 명시된 책임한도를 적용, 손실을 보상한다.

(b) 상기 법률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c) 보험가불금의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됨.

(d) 동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기술된 보험금청구권이 2년간 행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됨.

7) 대위권행사 포기특약과 교차책임 특약

(a) 대위권행사 포기특약

이증권은 여하한 배상요구사항과 관련된 사고에서 파생될 수 있는 피보험자를 포함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갖거나 또는 얻을 수 있는 대위 또는 이의 행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

(b) 교차책임특약

이증권은 보험약관 보상조항 A1, A2에 의해서 처리되는 대인신체배상책임과 대물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권을 단독 피보험자에게 발행한 것과 똑같이 보험조항, 조건, 면책사항을 적용하는 데 동의한다.

8) 보험금액전액보상특약

본증권은 전손사고 발생시 약관의 타조항에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금액을 전부보상하는 책임을 지며 잔존물은 보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9) 특별자동차보험약관(Ⅰ)

1. (회사의 보상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자동차보험증권 기재사항의 담보 A1(대인배상)과 A2(대물배상)에서 자동차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2. (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별표>의 자동차보험특별약관 보험금 지급기준 (이하 「보험금 지급기준)이라 합니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통지하였을 때
   (b)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c)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한 때
   (d)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또는 파산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때
   (e)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 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f)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a)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거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b) 회사는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교통사고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

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 회사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지급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회사에 대하여 우선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향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의료비 담보) 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담보 G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비 담보는 하기자에게 적용합니다.

(a)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 피보험자, 그의 부모, 배우자, 자 녀

(b)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 이사, 감사, 이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c)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말합니다.

7. (다른보험) 보통약관의 조건 6(다른보험)은 이 특별약관에 첨부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의 항목 Ⅲ-2(손익상계)로 대체됩니다.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면책조항(Exclusion)에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a)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운 전자를 포함합니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

(b)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 로 인한 손해

(c)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d) 남의 서화, 공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e)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파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용어정리)

1. 이 특별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휴대품 및 소지품이라 함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지갑,만년필,라이터,손목시계,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휴대품이외에 소지한 물품(휴대폰,노트북, 캠코더,카메라,CD플레이어,MP3 워크맨,녹음기,전자수첩,전자사전,휴대용라디오,핸드백, 서류가방,골프채등)은 소지품으로 봅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자기신체사고담보 특별약관

1. (회사의 지급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담보범위) 이 특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담보사항 G(의료비)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 특별약관과 보통약관 담보사항 G의 계약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담보사항 G는 자동취소되며 해당보험료는 즉시 돌려 드립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a)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b)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c) 피보험자가 마약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 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d)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다만,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 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f)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g) 지진, 분화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단, 태풍,홍수,해일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h)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i)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피보험자)

(a)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집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 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하고 있는 때에 한 합니다.

⑤ 전 각호의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⑥ 제①호 내지 제⑤호에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⑦ 제①호 내지 제④호에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b) 제 (a)항 각 호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제외)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5.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a)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1」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별표2」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b) 위 '(a)'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가.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

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라. 다만, '다'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별표1」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c)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d)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 동일한사고로 피보험자 1인마다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합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피보험자 1인마다의 보험금} \times \frac{\text{1사고당 보험가입금액}}{\text{피보험자 1인마다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의 합계액}}$$

6.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a)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b)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 회사는제 (b)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별표 1> 상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별표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금액표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	3,000	5,000	10,000
2급	1,350	2,700	4,500	9,000
3급	1,200	2,400	4,000	8,000
4급	1,050	2,100	3,500	7,000
5급	900	1,800	3,000	6,000
6급	750	1,500	2,500	5,000
7급	600	1,200	2,000	4,000
8급	450	900	1,500	3,000
9급	360	720	1,200	2,400
10급	270	540	900	1,800
11급	210	420	700	1,400
12급	150	300	500	1,000
13급	90	180	300	600
14급	60	120	200	400

㈜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1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회사의 보상책임)

(a)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b) 회사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무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2) 이 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a)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b)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⑦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⑨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c) 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② 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의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d)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운전한 것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

(a)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라함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①.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⑤ ①,②,③사항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다만, 위의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b) 제 (a)항 각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5.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a)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b)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이 약관 4.(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그러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③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⑤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⑥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6. (손해발생시의 의무)

(a) 피보험자가 이 약관 1.(회사의 보상책임)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서

②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③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④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⑤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b)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a)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자가용 승용자동차, 16인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 1톤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회사의 보상책임)

(a)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대물배

상', '자기신체사고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자기신체사고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b) 회사가 보상할 제(a)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대체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자기신체담보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때

4. (피보험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1. 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A1-신체상해책임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형사합의지원금 :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를 하여 합의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사망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부상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및 중상해사고(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부상형사합의지원금을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 준	사망	1급	2~3급	4급	5~6급	7급
보상 한도액	3,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만, 부상형사합의금 수령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위 '①'과 '②'의 차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③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45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경우 제외)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벌금지원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의 '① 내지 ②'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 명시)

(ㄷ)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ㄹ)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ㅁ)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②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③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④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⑥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⑦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⑧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가 생긴 때

⑨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⑩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⑫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대위 규정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6.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부상 형사합의지원금금 및 벌금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표>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1)'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7.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A1-신체상해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A1-신체상해책임’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벌금제외 추가 특별약관

1. 가입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특별약관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2. 보상

내용 (2)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④'의 '벌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준용 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 19조(앞지르기 방법) 제 1항·제 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내지 제20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 56조(갓길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 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 24조(보행자 보호)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 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제 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 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 41조(주취중 운전금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 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 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의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항의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별표>

특별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

Ⅰ. 대인배상

(a) 회사는 대인사고 배상책임에 관하여 다음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b) 대인배상책임 보험금 지급기준

<기재생략 : 개인용자동차보험 지급기준과 동일>

Ⅱ. 대물배상

(a) 회사는 대물사고 배상책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 대물사고 배상책임 한도액은 \20,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b) 대물사고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기준

<기재생략 : 개인용자동차보험 지급기준과 동일>

III. 과실상계

<기재생략 : 개인용자동차보험 지급기준과 동일>

14) 매직카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회사는 긴급운행용으로 3ℓ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는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새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6.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7.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8.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9. 부동액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0.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① 서비스 제한 차종
보험회사는 '제1조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제한 항목
구조 변경된 차	1.긴급견인서비스, 4.타이어교체서비스, 8.긴급구난서비스, 10.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전기자동차/Hybrid Car	3.배터리충전서비스
외산차	5.잠금장치해제서비스
LPG연료 사용차, 전기자동차	2.비상급유서비스

②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조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제주도나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산간지역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서비스, 타이어교체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및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긴급견인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비상급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LPG(또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보험자동차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5. 휠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타이어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6. 잠금장치 해제서비스에 있어서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8.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에 있어서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②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매직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조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종료)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합니다.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